

(별지 제1호 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신일학원 및 서울사이버대학교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감사결과 학교법인 신일학원 및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-	-	-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-	-	-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-	-	-	지적사항 없음
계	-	-	-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신일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 2. 서울사이버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 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8년 4월 16일

학교법인 신일학원

감 사 김 창 인 (인)

감 사 이 형 래 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1369호)

피감사 기관장

학교법인 신일학원

이 사 장 이 상 균 (인)

2018년 4월 16일

피감사 기관장

서울사이버대학교

총 장 이 은 주 (인)

2018년 4월 16일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귀하
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2017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8년 4 월 16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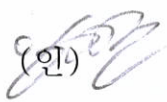
학교법인 신일학원

감 사 김 창 인 (인) 

감 사 이 형 래 (인) 

피감사자

직 명 학교법인 신일학원

성 명 이재훈 (인) 

(별지 제1의2호 서식)

서울사이버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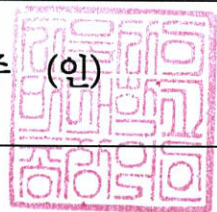
(회계연도 :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지적사항없음	
피감사기관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이은주 (인)	
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

(교비회계 · 부속병원회계)

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귀하
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서울사이버대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8년 4월 16일

학교법인 신일학원

감사 김창인 (인) 

감사 이형래 (인) 

피감사자

직명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

성명 이은주 (인) 